

한의학대학(원)교육과정위원회운영내규

제1조(목적)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제25조에 따라 한의학대학(원)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과정의 개선 및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교육목적과 교육목표(졸업역량, 시기성과, 과정성과 등)의 설정 및 개정
2.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(교양, 전공)의 학점 및 강의시수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 운영지침 및 교수법의 개선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
5. 성적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6.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학장, 부학장, 한의학과장, 한의예과장, 대학원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장이 맡으며, 부위원장은 부학장이 맡는다.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전임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. 단 임기 이전의 위원 교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④ 간사는 한의학과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의 이름, 목적, 기능, 기한 등에 대해

여 위원회의 의결과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운영소위원회, 교육과정평가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6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중 1인을 소위원회 위원장(이하 소위원장)으로 위촉한다.

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정할 수 있다.

⑤ 소위원회는 그 목적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.

제7조(자문위원회) 위원회는 수시로 교수, 학생,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하여야 하며, 창조적 인재교육 및 교육의 질적 향상과 졸업생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의과대학 보직자회의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당시 교과과정개선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하여 ‘교육과정위원회’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.